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8 선고 2020가합108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김용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변론 종결2022. 6. 23.

판결 선고2022.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558,532,0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558,532,051원을 양도하고, D 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E, F 및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7. 9. 18. '채권자 원고는 2015. 11. 1. 연대채무자 E, F, C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율 차용일로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변제기한까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연대채무자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2017년제524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7. 9. 18. '채권자 원고는 2013. 4. 10. 채무자 C에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2017년제525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F은 2017. 9. 18. '채권자 원고는 2013. 3. 12.부터 4회에 걸쳐 채무자 F에게 59,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2017년제526호, 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유치권 합의금 지급 합의서의 작성

1) H은 창원지방법원 I, J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김해시 K 대 3,517m²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C, E(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H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은 채권액 192,000,000원, C은 채권액 2,871,000,000원, E은 채권액 625,00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H과 F 외 2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소송이 진행되었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H은 2015. 4. 17. F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L), 위 법원은 2015. 7. 20. F 외 2인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위 인도명령은 2015. 10. 28. F 외 2인의 항고가 각하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라313호).

나) F 외 2인은 2015. 10. 1. 위 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 외 2인의 점유가 침탈되었음을 이유로 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54호). 위 법원은 2015. 11. 3. F 외 2인으로 하여금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관에게 담보로 현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2015금제4138호)하게 하고 F 외 2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F 외 2인은 2015. 9. 24. 위 나)항 기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본안으로 H에 대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574호), 위 법원은 2016. 2. 17. F 외 2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F 외 2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11. 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후 H은 F 외 2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0938호), 위 법원은 2017. 10. 19. F 외 2인으로 하여금 H에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 F, D 지역주택조합 등은 2018. 1. 15.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유치권 문제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선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D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F 외 2인에게 2,900,000,000원의 유치권 합의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F 외 2인을 대리한 F, 피고는 위 3)항 기재 약정에 기초하여 2018. 4. 24. D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D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합의금 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의서

갑: 이 사건 토지 유치권자[㈜C 대표이사 M, E, F] 대리인 F, 피고

을: D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N

사업부지: 이 사건 토지(4,623 m²)

위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C 대표이사 M, E, F으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과 유치권합의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이며,

"을"은 이 사건 토지(4,623m²)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업 부지의 매수인 D 지역주택조합임.

상기 "갑" "을"은 2018. 1. 15. 작성된 합의서(당사자: H, O, P, D 지역주택조합, 유치권대표 F, Q)에 의거 유치권 포기과 유치권 합의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 아래 -

1. 유치권 합의금 금액: 일금 이십구억원정(2,900,000,000원)

2. 유치권 합의금 지급일정

합의서 작성일	30,000,000	2018. 4. 30.
사업부지 소유권이전시	320,000,000	안분 지급
최초 중도금대출시	1,500,000,000	
중도금대출(2차~4차)	1,050,000,000	
합계	2,900,000,000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유치권합의금 지급일정을 정하되, 사업진행 중 조합의 자금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재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대리인 F,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함(지급시 마다 계좌지정 가능)

3. "갑"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을"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사업부지 내 있는 모든 집기는 이전해주기로 하며, 더 이상 "을"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추심명령 및 배당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 외 2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보유하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1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7타채1330호	F	=	이 사건 제1, 3 공정증서	385,141,090	2017. 10. 12.
2	울산지법 2017타채11046호	C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396,288,624	2017. 10. 19.	
3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타채6874호	E	이 사건 제1공정증서	287,570,241	2017. 10. 23.	
합계	1,068,999,955					

2) 창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 H 등이 발령받은 채권압류명령 등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26. 울산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R로 개시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8. 5. 28. 146,221,791원(=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7타채1330호 집행채권 관련 60,382,118원 + 울산지법 2017타채11046호 집행채권 관련 25,105,867원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타채6874호 관련 60,733,8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 15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대여원리금채무를 부담하는데, 2018. 10. 3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D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29억 원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C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피고는

별지 기재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보전채권액인 558,532,051원(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따른 대여원리금 407,863,018원 및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따른 대여원리금 150,669,033원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를 통해 교부받은 배당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기재 채권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액인 558,532,051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C에 양도하고, D 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F 외 2인은 관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S(E의 친척이자 피고의 아버지)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 사건 공탁금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런데 F 외 2인이 S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자, S은 F 외 2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 당시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약 6,750만 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개시될 배당절차에서 위 돈을 직접 지급받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원고 및 F 외 2인에게 요청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위와 같은 S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 외 2인이 원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배당금을 수령하여 S과 사이에 정산절차를 마친 이상,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대여원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21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법무법인 G가 2017. 9. 18. 작성하고 원고와 C 등이 서명·날인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원고가 2015. 11. 1. C에 20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7.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원고가 2013. 4. 10. C에 6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7.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7호증, 을 제1,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는 C를 비롯하여 F 외 2인이 원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F 외 2인이 S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납부한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2013. 4. 6. C의 실질적 사주인 T에게 U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1. 5. T, U로부터 약속이행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11. 25.까지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을 T, U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9. 13.부터 2016. 9. 9.까지 S에게 합계 4,700만 원(2015. 9. 13. 1,000만 원 + 2016. 6. 13. 1,000만 원 + 2016. 9. 9. 2,700만 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S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미루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S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의 T, U, S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F 외 2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C이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① 원고의 T, U에 대한 1억 4,500만 원의 약정금채권과 ② 원고의 S에 대한 4,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F 외 2인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여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고, ③ 원고의 T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C이 책임지기로 하여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F 외 2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T, U에 대한 1억 4,5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은 원고의 T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아 T, U가 작성하여 준 약속이행각서(갑 제12호증)에 기해 발생한 채권으로 위 대여금채권 금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원고의 T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독립하여 부담할 이유가 없다.

다) S은 2015. 11. 2. V로부터 수표로 3억 원을 빌려, 같은 날 F 외 2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F 외 2인은 S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일시(2015. 11. 1.) 및 금액(2억 원)은 위와 같이 S이 F 외 2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시기 및 대여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공정증서는 원고의 T, U에 대한 약정금 채권, S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아닌 S과 F 외 2인 사이의 위 대여금채권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라)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압류·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추심권자로서 합계 146,221,791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뒤, 67,492,791원만을 보유한 채 3,000만 원(현금 1,000만 원 +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은 S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1,000만 원은 S 명의로 E의 아들인 W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S이 지정한 X의 계좌로는 38,729,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을 비롯한 F 외 2인에게 채무를 실제 부담하게 할 의사로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가 합계 78,729,000원에 이르는 위 돈을 S 측에게 곧바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S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이 급하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전부(68,729,000원)¹⁾를 S에게 추가로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수년간 T, U, S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배당절차를 통해 이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변제받고도 차용증 작성도 없이 그 즉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F이 원고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F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공탁금 원래 주인은 S이고 S이 자기 소유의 수표를 넣었다, 그리고 배당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제 앞으로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S씨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빌린 사실이 있었고 그 돈에 수수료랑 합쳐서 총 6,750만 원만 저에게 주고 나머지는 S이 다 들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S에 대한 배당금 지급 경위와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나아가 원고는 'S 회장님 3천만 원 차용내역서'라는 제목으로 '2017. 8. 9. 현재까지 원고가 S을 대신하여 차용원리금 6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한 바 있는데, 위 차용내역서에 기재된 원고의 지급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를 통해 최종 보유한 금액에 근접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작성 당시 S은 V에게 돈을 빌려 이 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F 외 2인에게 대여한 2억 원을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S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만족을 포기한 채 오로지 원고만이 채권만족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F 외 2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S이 서로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배당금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고 등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금 146,221,791을 받아 6,750만 원을 가져가고, S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2021. 12.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2. 25.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사) 한편 원고는, 원고와 C 등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으로써 원고의 T, U, S, F 외 2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내지 약정금 채권 등을 원고의 F 외 2인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및 이자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만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경계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경계계약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한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은닉된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T, U, S, F 외 2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내지 약정금 채권 등을 원고의 F 외 2인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및 이자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만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위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대여원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대여원리금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현영

판사최리니

판사김은수

별지

1) 원고가 2018. 5. 28. 17:43:20경 Y은행 Z지점에서 S 명의로 W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